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4. 10. 1.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1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7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2014. 9. 2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정진 )

#### 가. 제안이유

- 우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재단의 시행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재단 재산의 조성(설립·운영 자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재단의 사무국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재단의 보고사항 및 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 우리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의 학비 지원 등 장학사업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법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장학재단의 의사결정은 온전히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 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결과**
  - 안 제5조(사업) 제1항 각호 중 제5호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목적1)에 비해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바,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8조(임원)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

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 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단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당연직이사 포함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참고로 구청장이 이사장인 ‘영등포구 문화재단’은 15명 이내 중 3명(2)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임직 이사 2명은 별도로 구의회에서 추천)

- 안 제9조(사무국)에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장학재단을 설립·운영중인 서울시 타 자치구와 달리 현재 장학재단 설립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조성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등 초기비용으로 최소 5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무국 운영에 따라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안 제12조(보고)에 “재단은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이사, 감사 임면 사항,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구청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장학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지휘·통제 기능과는 별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재단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의 예산·결산 및 그 부속자료에 대한 구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의 각종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장학금을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는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우리 구의 경우 기부를 통한 일정 규모의 재원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 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함께 안정적인 장학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재단의 사업목적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임원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나.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1항 제5호를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2항을  
“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을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행정국장  
2. 재정국장”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4항을  
“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을 제8조 제5항으로,
- 안 제8조 제4항을 제8조 제6항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5항을 제8조 제7항으로 신설하되

“제2항의” 를 “제3항의” 로 하며,

○ 안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8항으로 신설하고

○ 안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

##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4 |
|----------|---------|

제안년월일 : 2014. 9.

제출자 : 허홍석 위원외 1인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재단의 사업목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임원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 2.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1항 제5호를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2항을  
“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을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행정국장  
2. 재정국장”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4항을  
“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을 제8조 제5항으로,
- 안 제8조 제4항을 제8조 제6항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5항을 제8조 제7항으로 신설하되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 안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8항으로 신설하고

○ 안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제1항 제5호를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2항을

“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을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행정국장
2. 재정국장” 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4항을

“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로 하며

○ 안 제8조 제3항을 제8조 제5항으로,

○ 안 제8조 제4항을 제8조 제6항으로 하고

○ 안 제8조 제5항을 제8조 제7항으로 신설하되

“제2항의” 를 “제3항의” 로 하며,



○ 안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8항으로 신설하고

○ 안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b>제5조(사업)</b>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li> <li>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li> <li>3.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li> <li>4.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li> <li>5. <u>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li> <li>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p>          | <p><b>제5조(사업)</b>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원안과 같음)</li> <li>5. <u>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u></li> <li>6.(원안과 같음)</li> </ol> <p>② (원안과 같음)</p>   |
| <p><b>제8조(임원)</b>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u>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u></p> <p>③ <u>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u></p> <p>④ <u>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⑤ <u>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⑥ <u>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u></p> | <p><b>제8조(임원)</b> ① (원안과 같음)</p> <p>② <u>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u></p> <p>③ <u>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국장</li> <li>2. 재정국장</li> </ol> <p>④ <u>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u></p> <p>⑤ <u>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u></p> <p>⑥ <u>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12조(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⑦ 제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⑧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고) ① (원안과 같음)

1. ~ 5.(원안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4 호 |
|----------|-------|

제출연월일 : 2014.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우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시행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나. 재단 재산의 조성(설립·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다.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라. 재단의 사무국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마. 재단의 보고사항 및 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7.31~8.20, 20일간)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사무소)**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4.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 5.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구의 출연금
  -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구의 출연금
  -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